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
----------	-----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이장자녀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금액을 현재 2년제와 4년제 대학생에 대하여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나. 장학생의 추천에서 선발 및 심의 기간을 명시, 장학금의 적기 지급을 통해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생의 자격(조례안 제2조)
 - “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로 개정하여 지급의 정지 사유(조례안 제8조)인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된 경우”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함.
- 나. 장학금액(조례안 제6조)
 - 현행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 2년제, 4년제 구분 없이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14. 4. 08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중 “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를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로 한다.

제3조(추천) 중 “매 학기 선정하여”를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중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를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u>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u>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u>매 학기 선정하여</u>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에게 추천한다.</p> <p>제4조(선발 및 심의)</p> <p>① (생략)</p> <p>② <u>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u></p> <p>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중·고등 학생에게는 공납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u>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u>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 <u>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u>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추천)----- ----- -----<u>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u>-----.</p> <p>제4조(선발 및 심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삭제</u>)</p> <p>제6조(장학금액) ----- ----- -----, <u>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u> -----.</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년제 대학생에게 4년제 대학생과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2년제 대학생 1인당 300,000원의 추가 금액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연인원 20명 이내로서 6,000,000원 이내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편성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연락처	(033) 330 -2210